

법인 설립 허가서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.

1. 법인명 : 사단법인 미래지식사회연구회
2. 대표자 : 안병만 (생년월일 : 1941년 2월 8일)
3. 소재지 :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6, 501호
4. 목적사업
 - 가. 미래지식기반사회 관련 학술 및 정책 연구
 - 나. 미래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포럼 개최
 - 다. 미래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
 - 라. 회지, 연구보고서 등 각종 학술 자료 간행
5. 허가조건
 - 가.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를 받아야 한다.
 - 나. 법인의 목적달성이나 이를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마다 감독청에 보고를 하고,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다. 분사무소(지회)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, 분사무소의 활동내역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라.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,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마. 본 허가서 뒷면의 '이행사항'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6. 정관 : 붙임

2016년 11월 23일

서울특별시교육감

